

■ 군예식령 [별표 3] <개정 2026. 4. 7.>

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(제126조제2항 관련)

관 등 급	의장대의 편성기준
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	1개중대
원 수 대 장 중 장 소 장 준 장	중대장이 지휘하는 2개소대
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 하사관 병 }	1개소대 1개분대 병 5명

(비 고)

- (1) 소집중이 아닌 예비역이나 퇴역군인의 장의식을 행할 때의 의장대의 편성은 이 표에 준한다.
- (2) 국군장일 때에는 이 표에 의하되, 합동의장대로 한다.
- (3) 의장대에는 의장대원외에 조총수·나팔수를 포함시켜야 하며, 군악대가 동원되는 경우에는 나팔수는 군악대에 포함시킨다.